

교원 해외파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을 국내·외 대학 및 다른 기구·기관에 파견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유) 본교의 발전 및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과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연구·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기간) 교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2호에 의한 파견 기간은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자격) 교원의 해외파견은 학술 및 학사제도 연구 또는 국가적인 공무수행 등을 통하여 본교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2. 연구 실적 및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해외파견국의 어학실력을 소유한 자로 인정되는 자
3. 파견기간 중 소속 전공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학부장 또는 소속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파견신청) 해외 파견을 희망하는 교원은 파견예정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장 및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한다.

1. 연구 계획서 1부
2. 학부(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추천서 1부
3. 서약서 1부
4. 기타(학술교류협정 및 기관·단체의 확인공문) 1부.

제6조(허가) ① 해외파견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② 허가기준은 교원업적 평가성과 근무성적 및 총장의 대학운영 방침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7조(파견자 의무) 해외 대학 및 기관에 파견된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교와 국가의 위신 및 교직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정된 파견지와 연구분야에서 연구하여야 하며, 임의로 파견지 및 연구 분야를 변경하지 못한다.
3. 파견지에 도착 즉시 연락처와 참고 사항, 기타 매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4. 파견자는 연구 및 시찰종료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5. 귀국 즉시(7일 이내) 귀국보고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 파견교원은 본교 교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며 파견기간은 복무기간으로 간주한다.

제9조(복무) 파견교원은 파견 받은 대학 또는 기관의 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제10조(소환) 총장은 파견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소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국내 또는 당해 외국의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총장의 허가 없이 연구 기간을 경과하였거나 파견지 및 연구 분야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연구업적이 불량하고 계속 연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파견기간 중 타 기관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해외파견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급여) 해외파견 교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교수에게는 파견기간 중 보수를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수이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개월까지는 월급여액 전액지급하고, 6개월 이상은 월급여액의 70%를 지급한다.
3. 정부의 공무위촉과 국제적인 학회 또는 이에 준할 만한 국제회합에 출석하는 경우.
 - 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급여액의 70%지급한다.
 - 나.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50%지급한다.
 - 다.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처리 한다.
4. 교원이 외국의 학교, 기타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취업 형식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직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한다. 다만, 그 목적이 현저하게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 가. 3개월 이내는 월급여액의 70%를 지급한다.
 - 나. 6개월 이내는 월급여액의 50%를 지급한다.
 - 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휴직처리 한다.
 - 라. 교환교수는 파견기간 중 보수를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위 사항 이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년제도와와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연구년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